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제정 2017.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업평가 및 강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강의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본조개정 2020.9.1.]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 학부에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논문 등 0학점 P/NP 강좌, 채플,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는 강좌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18.>

[본조개정 2017.12.20.]

제3조(평가절차) 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강의평가 기본계획 수립
2. 평가대상 제외 신청 접수 및 확정
3. 강의평가 계획 확정 및 공지
4. 강의평가 실시
5. 강의평가 점수 산정
6. 강의평가 결과 열람
7.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강의평가 결과 분석 및 강의 개선 방안 도출
9. 강의평가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공개 및 활용

② 평가대상, 평가도구, 평가시기와 방법, 평가점수 산정, 평가결과 공개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자문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강의평가위원회의 연구
2.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
3. 교무위원회의 심의
4. 총장의 승인 및 시행

제2장 강의평가 도구

제4조(평가구성) 강의평가는 학습자평가 및 교수자평가로 구성한다.

제5조(평가유형 및 항목) ① 평가유형은 강좌의 개설 목적 및 운영방법 등에 따라 이론강좌, 실기/실습/실험 실습강좌, 원격강좌, 블렌디드러닝강좌, iClass강좌, 지도강좌 등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0., 2019.9.1., 2020.2.20.>

② 평가문항은 평가유형에 따라 달리하되, 학습자평가 문항과 교수자평가 문항으로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7조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도강좌와 중간 강의평가 문항은 강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2018.3.1., 2018.11.1., 2019.9.1.>

③ 선택형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한다. <개정 2017.12.20.>

제3장 강의평가 시행

제6조(평가시기와 방법) ① 강의평가 시기는 매학기 종강 2주전부터 성적공개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간 강의평가는 6주차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학기, 집중이수제, 마이크로러닝 등의 강좌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1., 2018.9.1., 2023.3.1.>

② 강의평가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평가하며, 익명성을 보장한다.

③ 불성실한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강의평가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한 경우 평가입력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수강한 전체 강좌에 대해 강의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열람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통계 표준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는 수강학생 평가점수들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제외한다.

1. 해당 강좌에서 성적이 F등급인 학생의 평가점수

2. 해당 강좌의 강의평가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pm 2.5\sigma$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평가점수

③ 강좌별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보정 후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반하여 운영한 강좌는 1개 강좌로 통합하여 점수산출 및 수강인원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9.1.>

1. 수강인원이 40명 이상 60명 미만인 강좌는 원점수에 0.10점 가산

2. 수강인원이 60명 이상인 강좌는 원점수에 0.15점 가산

④ 강좌별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의평가점수를 보정하며, 보정기준점수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9.1.>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는 보정기준점수 적용

2. 수강인원이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강좌는 보정기준점수와 원점수에 대해 선형보간법 적용

⑤ 보정기준점수는 해당 교원이 담당한 강좌 중에서 제7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강좌와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강좌를 제외한 후 제3항의 가산점을 적용하여 계산한 교원별 강의평가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해당하는 강좌가 없을 경우에는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강좌에 선형보간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평균점수로 하며, 이에 해당되는 강좌도 없을 경우에는 제8항에서 정하는 대학 전체의 강의평가 평균점수로 한다. <개정 2023.3.1.>

1. 제2조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강좌

2. 그 밖에 과목의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

⑥ 2명 이상의 교원이 공동으로 강의한 강좌는 모든 교원에게 동일한 강의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⑦ 교원별 강의평가 평균점수는 담당강좌별 강의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강좌는

제외하며,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의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중간 강의평가 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 2018.3.1.>

1. 4명 이상의 교원이 공동으로 강의한 강좌
2. 강의평가인원이 0명인 강좌
3. 교원이 직접 강의하지 않고 지도만 하는 다음 각 목의 지도강좌

가. 진로지도세미나

나. 개인(팀)프로젝트

다. 현장실습(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강좌이나 교원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에는 평균점수 산정에 포함)

4. 교원이 8주 미만으로 강의하고, 특강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 강좌
5. 그 밖에 강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강좌

⑧ 대학 전체의 강의평가 평균점수는 평가대상 강좌 중에서 제7항의 제2호와 제3호에서 정하는 강좌, 타 대학 개설 학점교류 강좌, 그리고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강좌를 제외한 후 제3항의 가산점을 적용하여 계산한 평균점수로 한다.

[본조개정 2017.12.20.]

제4장 평가결과 공개

제8조(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① 강의평가 결과는 성적정정 기간 이후에 종합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담당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 문항별 강의평가 점수, 백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학생들의 개별 강의평가 내용은 개방형 문항에 한정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7.12.20.>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정해진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사항 중 절차 또는 점수 산정식 적용 등의 오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자체처리하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강의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개대상: 강의평가 대상 전체 강좌
2. 공개기간: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3. 공개범위: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
4. 열람대상: 수강신청대상자 전체

② 강의평가를 공개할 때 수강인원, 평가참여인원, 강의평가 점수, 수강소감 등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보고 및 비밀유지 등) ① 교육과정평가센터는 강의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 결과 외 개별 교원의 강의평가 결과와 평가관련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

③ 평가결과는 해당 교원 및 강의평가 업무담당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 및 학과장(전공주임)은 소속 비전임 교원의 강의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④ 강의평가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강의 개선

제11조(강의평가 결과보고서) ① 강의평가위원회는 매 학기 강의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작성을 생략하거나 정규학기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강의평가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강의평가의 목적
2. 강의평가 문항구성
3. 강의평가 기간 및 방법
4. 강의평가 참여현황
5. 수강인원별 강의평가 점수 보정
6. 강의평가 분석결과(학생영역, 교원영역, 강좌유형별, 교원직급별, 단과대학별 등)
7. 강의평가 방법 및 강의 개선 방안

제12조(평가결과 적용) ① 강의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 교원 재임용 및 승진, 강사 위촉 시에 반영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본교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강좌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강좌를 대상으로 하며 학과(전공) 및 계열에 상관없이 강의평가 결과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제13조(강의 개선) ① 교육혁신본부장은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수역량 강화, 교수법 개선, 교육과정 개선, 학사지원제도 개선, 강의평가방법 개선 등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단서와 제7조제7항제2호와 제3호에서 정하는 강좌를 제외한 모든 강좌의 담당 교원은 정해진 기간에 강의개선계획서를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강의개선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 해당 강좌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은 강의평가점수가 3.75점 미만인면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강좌에 대하여 수업계획서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2개 학기 동안 연속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의개선계획서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3.75점 미만인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교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법 교육을 받아야하며, 2개 학기동안 연속하여 해당하는 교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0.>
3. 총장은 위 2호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받지 아니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제4항제2호의 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3.1.>
2.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2개 학기 동안 연속하여 3.5점 미만인면서 하위 10%에 해당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 초과강의, 계절수업, 대학원수업, 신입교원 강의능력 평가, 수업기간 중의 해외여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3.75점 미만인면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대하

여 다음 학기의 수업을 6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2개 학기 동안 연속하여 3.75점 미만이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대하여 1년간 수업 및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 수업 및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5. <삭제 2024.3.1.>

6. 총장은 위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제한조치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강의평가 점수 및 백분위 기준은 2년 단위로 분석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6장 강의평가위원회

제14조(설치)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강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8.>

② 위원장은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이 된다.

③ 교무부처장, 교양교육연구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0.12.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9.1.>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강의평가 기본 계획 수립
2.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
3. 강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4. 강의평가 환류체계 구축
5. 그 밖에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전주대학교 강좌평가 운영지침」 및 「교양 교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 1] <개정 2018.5.31., 2018.9.1., 2018.11.1., 2019.9.1., 2020.2.20.>

강의평가 문항

구 분	번호	평가유형*	문 항
학습자 평가	1	공통	나는 수업준비(예습, 복습, 관련정보 탐색 등)를 충실히 하였다.
	2	공통	나는 이 수업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향상되었다.
	3	공통	수업계획서는 수업을 준비하는 데 적절하였다.
교수자 평가	4	이론, 실습	교재 및 학습자료의 내용과 난이도가 적절하였다.
		원격	강의콘텐츠의 내용과 난이도가 적절하였다.
		iClass	강의콘텐츠 및 활동지 등 학습자료의 내용과 난이도가 적절하였다.
		블렌디드	강의콘텐츠, 교재 및 학습자료의 내용과 난이도가 적절하였다.
	5	공통	시험 및 과제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었다.
	6	이론, 실습, iClass, 블렌디드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원격	교수는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7	이론	교수는 학습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하였다(강의, 발표, 세미나 등).
		실습	교수는 학습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하였다(실기, 실습, 실험 등).
		원격, 블렌디드	교수는 학습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하였다(동영상, 질의응답, 토론 등).
		iClass	교수는 학습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하였다(동영상, 팀별학습, 토론 등).
	8	이론, 실습, iClass, 블렌디드	교수는 강의시간 및 휴보강 등을 준수하였다.
		원격	강의콘텐츠는 강의일정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제공되었다.
	9	공통	교수는 학습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10	이론, iClass, 블렌디드	교수는 발표, 과제, 시험 등에 대해 피드백을 해 주었다.
		실습	교수는 실기/실습/실험실습 과정 발표, 과제, 시험 등에 대해 피드백을 해 주었다.
		원격	교수는 학생의 질의, 과제, 시험 등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었다.
	11	공통	교수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였다.
건의 사항	12	공통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을 적어주십시오.
	13	공통	이 수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적어주십시오.

* 실습: 실기/실습/실험실습, 블렌디드: 블렌디드러닝